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3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이영실, 곽향기, 김경훈,
김인제, 김재진, 남궁역,
박승진, 박춘선, 봉양순,
아이수루, 이민옥, 이소라,
, 이원형, 이은림, 정준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량 배출, 다양한 품목 및 다른 처리방법 등 특성이 있어, 자치구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 위해 기능이 있는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제1항).
- 나. 구청장의 폐기물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).
- 다. 市의 성과관리, 자료요구, 시정조치 등 규정을 통해 市의 구체적 권한을 명시함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」, 「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5”로 한다.

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성과보고서,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,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·확인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탄재·재활용가능품·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 제3호가목(2)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) 별표5 제3호가 목(2)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</p> <p>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성</p>

과보고서,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,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·확인할 수 있으며,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3101100000002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이영실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)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3년도 폐기물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	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(양천, 노원, 강남, 마포)	97,121,915
	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	4,156,533
	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	414,000
	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	3,634,000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[붙임1] 2023년 폐기물 관리 관련 사업설명서

①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(양천, 노원, 강남, 마포)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양천, 노원, 강남,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

- 위탁 기간 및 위탁운영사

양천 : 2020. 4. 1. ~ 2023. 3. 31. (3년간) 환경에너지솔루션(주)

노원 : 2021. 2. 1. ~ 2024. 1. 31. (3년간) (주)우주엔비텍

강남 : 2020. 4. 1. ~ 2023. 3. 31. (3년간) 한라산업개발(주)

마포 : 2021. 6. 1. ~ 2024. 5. 31. (3년간) 한중산업개발(주)

○ 규모

- 시설현황 : 총 소각용량 2,850톤/일

양천 : 400톤/일(200톤/일×2기), 준공일(1996. 2. 28.), 면적 14,627㎡

노원 : 800톤/일(400톤/일×2기), 준공일(1997. 1. 15.), 면적 46,307㎡

강남 : 900톤/일(300톤/일×3기), 준공일(2001. 12. 29.), 면적 63,813㎡

마포 : 750톤/일(250톤/일×3기), 준공일(2005. 5. 21.), 면적 58,435㎡

○ 사업 기간 : 2023년 1월~12월

○ 사업내용 : 4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

○ '23년도 소요예산(안) : 97,121,915천원

- 민간위탁금(82,836,415천원) : 자원회수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경비
고정비(비정산 인건비), 변동비(약품비, 공공요금, 시설유지보수비 등
정산비)

- 민간위탁사업비(14,075,500천원) : 시설물 및 소각설비 유지보수 등
자본형성적 경비
자원회수시설 노후 설비 개량 및 시설물 보수

- 연구용역비(210,000천원) :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조사

○ 자원회수시설(4개소) 근로자 및 작업환경

- 작업환경 측정 : 다이옥신(공기 중), 미세먼지(PM10, PM2.5) 등

- 인체영향 측정 : 다이옥신(혈청), 종양표지자 등
- 정신건강 검사 : 업무 스트레스 검사

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

- 구로구, 은평구
- 감량목표 달성 자치구

○ 사업기간

- 광명자원회수시설(구로구) : 2000. 7. 10. ~ 자원회수시설 폐쇄시까지
연장(구로구 청소행정과-12772, '20.5.20.)
- 은평자원회수시설(은평구) : 2011. 12. 1. ~ 2030. 11. 30. (20년간)

○ 사업내용

- 구로구 : 광명자원회수시설 운영비와 주민지원기금 중 구로구 부담금 지원
- 은평구 : 은평환경플랜트 운영적자의 50%를 서울시에서 부담
- 2022년 공공처리시설 감량목표 달성시 다음연도 반입총량에 대해
반입수수료 10% 감면(지원)

○ 소요예산 : 4,156,533천원

- 구로구 : 988,939천원(광명자원회수시설)
- 은평구 : 2,671,349천원(은평환경플랜트)
- 쓰레기감량 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: 496,245천원

③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양천·노원·강남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지역(시설로부터 반경
300m 이내)

※ 마포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(간접영향권) 이내 거주 주민 부재

- 조사대상 :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주민 및 비교지역 주민 중 장기거주자 선정
- 사업 기간 : 2023.1. ~ 2023.12.
- 사업내용
 - 환경영향조사 : 유해물질 배출량 평가, 대기질 조사(미세먼지, 중금속 등)
 - 인체영향조사 : 혈중 유해물질농도 평가 및 위해성 분석(다이옥신, 중금속 등)
 - 건강영향조사 : 기초 임상검사, 종양표지자 검사, 삶의 질 평가 및 문진
- 총사업비 : 414백만원

4]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
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23년~2026년
 - 사업대상 : 양천, 노원, 강남, 마포 자원회수시설
 -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
 - 사업의 주요 내용 : 주민친화시설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